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생용품소분의 대상 등) ① 「위생용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판매해서는 안 된다.

1. 문신용 염료

2. 일회용 면봉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이란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생용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가공·소분 또는 포장하는”을 “제조·가공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

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2항 각 호”를 “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소분업의 신고”로,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를 “각각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위생용품소분업자”라 한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라 한다)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영업을 하려는 해당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전단 중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한”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한”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해 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위생용품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별표 1 제1호 중 “제조시설”을 “제조시설, 소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위생용품제조업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필요한 작업시설을 말하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작업장은 탈진실·세탁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필요한”을 “영업의 종류별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2)에 각 세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호 다목1)나) 중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또는 위생용품소분업”으로 하고, 같은 1) 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또는 위생용품소분업자”로 한다.

가) 위생용품제조업 :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소분실 · 포장실,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 · 가공에 필요한 작업시설

나) 위생물수건처리업 : 탈진실 · 세탁실 · 포장실, 그 밖에 위생

물수건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작업시설

다) 위생용품소분업 : 소분실 · 포장실, 그 밖에 위생용품의 소

분 · 포장에 필요한 작업시설

별표 1 제2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검사실(위생용품소분업은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라)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제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생용품제조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용품소분업자”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영업소 내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용품과 위생용품 외의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생용품 리필자동판매기(이하 “리필자판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리필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장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를 “제조·가공

· 소분 · 위생처리 또는 판매”로, “작업장”을 “작업장 · 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제조 · 가공 · 소분”을 “제조 · 가공”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조 · 가공 · 소분 또는 포장하는”을 “제조 · 가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조 · 가공 · 소분”을 “제조 · 가공”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간 거래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 · 운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생용품의 소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소분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라. 위생용품소분업자는 법 제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 · 가공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간 거래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해서는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는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판매해야 한다.

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떨어서 판매할 수 없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품목별”을 “유형별”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자”를 “제조·가공·위생처리하게 하는 자”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을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별표 7 I 제11호나목 중 “제조·가공·수입·위생처리”를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로 하고, 같은 I 제12호 중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를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또

는 위생용품소분업자”로 하며, 같은 표 Ⅱ 제1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소분업”으로하고, 제1호의 표 제2호 라목 및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생용품소분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2 제5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7일

별표 7 Ⅱ 제1호의 표 제4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Ⅱ 제1호의 표 제4호 바목 및 7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생용품을 소분할 때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의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7 Ⅱ 제2호에 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별표 7 Ⅱ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2) 그 밖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2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6호나목, 다목, 라목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위생용품을 저장·진열·판매한 경우 4.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위생용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나. 위생용품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18조 법 제15조, 제17조,	영업정지 7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	--	---	---	--

1)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	
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마.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바. 별표 4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표시·광고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3개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7조	영업정지 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0일 및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17조			
가.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 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 고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회수·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한 것으로 속인 경 우		영업소 폐쇄		
6의2.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17조	영업소 폐쇄		
7의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법	법 제15 조, 제17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	--	--	--	--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소분업

별표 8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중전의 제3호) 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
3호까지”로 한다.

3.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제4호가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3조제3항”으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기호(○) 중 “면적 :”를 “면적(한시적 영업인 경
우 제외) :”로 하고, 같은 앞쪽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업의 기간(한시적 영업에 한함)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항”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항·제3항”으로, 같은 앞쪽 중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을 “시행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조업)”을 “(제조업,소분업,리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소분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수입업)”을 “(수입업,리필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을 “시행규칙 제3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조업”을 “제조업 []소분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물수건처리업 []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US\$”를 “USD”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US\$”를 각각 “USD”로 하며, 같은 서식 중 “Food&Drug”를 “Food and Drug”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시행규칙 제2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2]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제26조의2제1항 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

위해위생용품 긴급회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영업자:

바. 영업자주소:

사. 연락처: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위생용품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위생용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
해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신고인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영업의 종류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소분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조·가공하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용품제조업), 소분하는 위생용품 종류(위생용품소분업), 리필판매하려는 위생용품의 종류(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 세척제 [] 행굼보조제 [] 일회용 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구강관리용품 [] 문신용 염료				
영업 기간 및 소재지(한시적 영업의 경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간은 1개월 이내, 소재지는 한시적으로营业을 하려는 장소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위생용품제조업·위생물수건처리업·위생용품소분업·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시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가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 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 리 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위생용품소분의 대상 등)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판매해서는 안 된다.</u> <u>1. 문신용 염료</u> <u>2. 일회용 면봉</u> <u>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u> <u>② 법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이란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말한다.</u>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① 법 제3조제1항 ----- -----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
(이하 “위생용품제조업자”라 한
다)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
게 위생용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가공·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 위탁한 위
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위탁한 제조공정에 관
련되는 일부 시설은 위탁받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해당 제조
공정에 관련되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
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② -----

----- 제조·가공하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①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
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
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 --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 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자”라 한다)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별표 1 제4호라목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사본(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영업을 하려는 해당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도 -----

----- 제3항에 따른 -----

----- 제3항 각 호 -----

-----.

⑤ ----- 제4항 -----

⑥ ----- 제4항 -----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⑥ 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

⑦ -----
----- 위생물수건
처리업·위생용품소분업의 신고
--- 각각 “위생물수건처리업
자”, “위생용품소분업자”라 한
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
업자 ----- 제6항-

-----.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
----- 위생용품제조
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신 설>

-----, -----
----- 제조·가공·위생처리한 -----
-----.

제26조의2(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u>제26조의2</u> ~ <u>제26조의4</u> (생략)	<u>제26조의3</u> ~ <u>제26조의5</u> (현행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와 같음)
------------------------------------	--